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 오피스텔 분양광고(안)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등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 견본주택내 분양 상담전화(☎042-826-0377)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1.11.26.)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 접수 및 전산 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는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1.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11.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의 건축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3 제 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 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 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1-건축과-6호(2021.11.25.)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건축과-신축허가-146호(2020.07.16.)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도안 2-1지구 준주거용지(SC1) C5블럭
▣ 사업시행자 : 시행위탁자 - ㈜유토개발1차,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 분양사업자 : ㈜하나자산신탁 ▣ 시공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신탁업자(시행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111.0000㎡
- 건축물 연면적 : 10,278.5479㎡ (오피스텔 : 7,309.3763㎡)
- 건축물층별 용도 : 지하3층~지상1층(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부대복리시설), 지상1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지상12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12층, 오피스텔 총 40실
- 주차대수 : 총 71대 (근린생활시설 : 20대, 오피스텔 : 51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 목의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 내진설계등급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24g입니다.

지역구역계수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0.2	S4	1.2	D	1

▣ 입주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 규모 (단위 : ㎡, 실)

타입	호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84A	30	84.9364	27.2833	112.2197	70.3764	182.5961	36.3346
84B	10	84.9291	27.8491	112.7782	70.3703	183.1485	36.3315

※ 향후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변경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1.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에게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해 전산 추첨하여 선정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청약자에 포함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VAT포함)

타입	구분	호실수	총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시	'22.01.14	'22.04.15	'22.11.15	'23.06.14	'23.12.15	'24.03.15	'24.06.14	입주시
84A	3층	3	181,855,497	351,858,639	35,185,864	568,900,000	10,000,000	4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170,670,000
	4층	3	185,691,436	359,280,512	35,928,051	580,900,000	10,000,000	4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174,270,000
	5층	3	189,527,376	366,702,386	36,670,239	592,900,000	10,000,000	49,290,000	59,290,000	59,290,000	59,290,000	59,290,000	59,290,000	59,290,000	177,870,000
	6~12층	21	191,413,379	370,351,473	37,035,147	598,800,000	10,000,000	4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179,640,000
84B	3층	1	178,211,354	344,807,860	34,480,786	557,500,000	10,000,000	4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55,750,000	167,250,000
	4층	1	181,951,395	352,044,186	35,204,419	569,200,000	10,000,000	46,920,000	56,920,000	56,920,000	56,920,000	56,920,000	56,920,000	56,920,000	170,760,000
	5층	1	185,691,436	359,280,512	35,928,051	580,900,000	10,000,000	4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58,090,000	174,270,000
	6~12층	7	187,577,440	362,929,600	36,292,960	586,800,000	10,000,000	4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176,040,000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각 오피스텔 타입별, 층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동일 블록 내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40실은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각 오피스텔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공급계약과 관련된 인지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는 책임지고 분양계약 체결시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인지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2014.12.03.개정]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센터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 별로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MDF실 등)인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및 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11.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단,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1.11.2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 12월 2일(목)	2021년 12월 7일(화) 16:00시 이후	2021년 12월 9일(목) ~ 12월 10일(금) (10: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안내

구 분	구비 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구 분	내 용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우리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 타입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1.26.)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 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일시	당첨자발표 장소
2021년 12월 7일(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 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 계좌오류 등 송금불능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12월 9일(목) ~ 12월 10일(금)	10:00 ~ 17:00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 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우리은행	1005-185-21111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501동 701호" "당첨자 홍길동" → 05010701홍길동)
계약금 2차 /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시 호실별로 계좌 부여 (가상 계좌)		

- 지정된 계약금(1, 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 및 가상계좌(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좌부여)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차 계약금 납부 : 상기 1차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501동 701호 계약자 → "05010701홍길동" / 501동 702호 계약자 → "05010702홍길동"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 임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길 바람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1차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납부일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가 계약체결 시 별도 생성되어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 초본 1통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전자수입인지 구입처(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 ~ 10억이하 : 15만원)
법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전자수입인지 구입처(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 ~ 10억이하 : 15만원)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11.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 받는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 발생 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계약 외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6회차분은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금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시 사업시행자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가 통보하는 입주개시 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현금으로 직접 납부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융기관 : 계약체결 이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은행(단, 대출금액 및 대출은행은 정부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 대출알선금액 : 중도금 중 해당 금액(중도금 1회차 ~ 중도금 5회차 범위내)

Ⅳ. 선택품목 안내

▣ 추가 선택품목

1.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 입	제조사	금 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BIS냉장고(S711SI24B)	전 타 입	LG전자	5,750,000	
	BIS냉장고(S691SI34BS2)		LG전자	7,65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		LG전자	1,250,000	
식기세척기	DUB22SB		LG전자	1,190,000	
	DWA-81R0D		SK매직	1,090,000	
	DWA-76U5B		SK매직	780,000	

2. 마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 입	제조사	금 액	비고
마루(수입)	합판마루(전체)	84A	마이스터	9,220,000	
		84B		9,540,000	
마루(수입)	합판마루(방) + 타일형마루(거실,주방)	84A	마이스터	8,290,000	
		84B		8,600,000	
마루(국산)	합판마루(전체)	84A	구정마루	2,370,000	
		84B		2,450,000	

3. 기타 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 입	세부사항	금 액	비고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84A	주방벽	1,370,000	
	84B		1,650,000	
주방 세라믹타일	84A	화이트(주방벽+상판)	5,210,000	
	84B		5,450,000	
	84A	그레이(주방벽+상판)	5,970,000	

	84B		6,320,000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	84A	확장기본 / 침실선택2형	3,580,000	
		침실선택 1형	3,330,000	
	84B	확장기본 / 침실선택2형	5,250,000	
		침실선택 1형	5,000,000	
중문	84A	원슬라이딩	1,140,000	
	84B	원슬라이딩	1,140,000	
안방수납강화	84A		3,920,000	
	84B		3,940,000	
주방장식장	84B		890,000	
평면선택	84A	침실선택1형	7,080,000	
	84B		7,080,000	
	84A	침실선택2형	2,690,000	
	84B		2,690,000	
주방 빅아일랜드식탁	84A	엔지니어드스톤	740,000	
	84B		710,000	
	84A	세라믹판넬(화이트)	970,000	
	84B		940,000	
	84A	세라믹판넬(그레이)	1,000,000	
	84B		970,000	
간접조명	84A		630,000	
	84B		630,000	

※ 추가 선택 품목 납입 계좌는 추후 옵션 계약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와 별도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광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대전광역시 유성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하의 오피스텔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 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유토개발1차,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과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토개발1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VI. 기타 유의 사항

▣ 일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복합시설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후 인근 준주거용지(C2, C3) 및 주차장용지(P1) 개발 시 일부 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일반복리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본 단지의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단지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이나 신분증/등본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사업주체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당 단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정산 처리하며,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 경우 해당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의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사유(담보대출불가 등)로 사업주체에 빠른 이행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본 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 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현관은 출입 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별 실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 등 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선택형 타입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가구,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고 이와 관련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형평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30415-26905(1990.10.15)]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재를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계약 시 각종 상행위 및 견본주택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 아트월, 주방세라믹타일, 주방빅아일랜드, 중문, 슬라이딩도어, 간접조명 및 일부조명 등은 별도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 및 건축허가도면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벽의 줄눈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 및 식재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옥상에 산책로, 휴게공간 등 입주민 편의공간이 조성되어 저층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및 시각적 노출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기사, 자료, 문구,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 및 분양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마트주방패드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비주거시설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준공 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오피스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장식물,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시설내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협의 또는 설계변경, 경관 및 색채계획 등 포함)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후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 변경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등 기타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각 공급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배치상 라인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또는 타입별 선택형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선택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각 호실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에 세대용 전기통신함이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되며,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창고 및 드레스룸, 실외기실 천장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 도서상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점검구가 해당 실의 천정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실 내부의 욕실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창호크기, 개폐방향, 색채 등은 구조 및 안전성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각층의 에이컨 실외기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는 일부만 제공되며, 집기 및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부대시설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과 진입동선을 공유하며, 차단기 설치로 별도 구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시설별 계획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면적 배분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지상/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추후 주차장 램프 천정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재활용품보관실, 자전거보관소,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DRY AREA의 위치 및 환풍구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이동 및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될 수 있으며,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 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 1층 및 지하2층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은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주방에는 인덕션(하이라이트 포함) 설치로 인해 취사용 가스는 공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3~10층은 소방법에 의해 복도에 피난기구(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2층 설치)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 또는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는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본 공사시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 2등에 의거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스마트주방패드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 HDC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카카오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무선 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호실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IPARK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각 실의 벽체구조는 건축허가 및 착공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 (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 가스보일러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겨울철 동파에 주의해야 합니다.(실외기실 루버는 미사용시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하부 배관에 동파방지열선이 설치되며, 겨울철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흙막이 설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창문 닫힘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떨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천장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 별로 상이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 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 시설, 조경 포장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형태나 재료,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오피스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제2021-114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주차장은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동별 주차장 이용 시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상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는 일부 옥상 조경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오피스텔 입주민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으로,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전면 공간은 오피스텔 및 점포 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점포의 소유자가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에 면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점포의 소유자가 상행위에 따른 부속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은 소음피해 또는 통행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위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관련사항 중복)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외벽로고사인,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필로티,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 등 외부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 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회 사 명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천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61,960,000원**	**150,800,000원**
법인등록번호	160111-0019269	164811-0114855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감리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시행자 및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역삼동)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유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층	160111-0461486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10111-6740008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도시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8길 43(삼성동)	110111-301639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류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하나자산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역삼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07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도안 2-1지구 준주거용지(SC-1) C5블럭
 ② 지목 : 답 등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3층 ~ 지상 최고 12층, 1개동 오피스텔 총 40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분양광고 참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i-park.com/daejeon_doan

▣ 분양문의 : ☎042-826-0377

현장 및 견본주택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번지**	[현장] **대전광역시 도안 2-1지구 준주거용지(SC-1) C5블럭**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